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텀재가주간보호센터

제1조 (정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본 시설의 이용자 정원은 22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자)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 (모집방법)

본 시설은 다음 각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급자를 모집한다.

- 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대상 수급자를 모집한다.
- ② 시설의 전단지 및 리플릿 배포, 현수막을 제작, 시설차량을 이용하여 홍보한다.
- ③ 지역사회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다.
- ④ 시설 홈페이지에 이용절차를 게시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문의접수를 받고 상담한다.
- ⑤ 노인장기요양보험포탈에 시설을 등록하여 소개하고 이용절차를 게시한다.
- ⑥ 자원봉사자, 시설 이용 중인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소개로 모집한다.

제4조 (계약목적)

수급자가 본 시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하게 명기하여 이용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계약 체결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른다.

- ①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한다.
- ② 구체적인 이용 기간 및 계약 기간의 변경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정 유효기간 내에서 원하는 기간까지 계약한다.
- ④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 ⑤ 위 ④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까지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
- ⑥ 변경 된 계약내용(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용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계약유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계약기간 만료 전, 다음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설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① 시설의 해제
 1.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수급자 또는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험이 될 때
 3.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시설장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 통보한 것이 들어났을 때
 5. 거짓이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이 들어났을 때
 6. 시설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 또는 법적 부양의무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계약해제일로부터 7일전에 시설에 통보 (단, 방문이 부득이한 경우 유선 통보 가능)
 3.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 ③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시설 내에 있는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인수하여야 한다. 단,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은 등기, 택배 등으로 물품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④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항목을 알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 권리
 3. 수급자가 쾌적한 시설 내에서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4. 시설 내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5. 수급자의 급여 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7. 시설의 협력병원 이용 외 특별한 경우 수급자에 대한 이용 병원을 지정할 권리
- ⑤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상태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힘든 경우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간병, 입·퇴원 절차 및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6. 수급자의 상태변화와 급여계획, 급여 종류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사유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으로 인한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2.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4. 물가 변동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② 본인부담금 비용 변경 시 변경 방법

1.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통보한다.
2.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유선이나 전자발송으로 고지하고 이를 동의 받으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않는다. 단,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재계약서 작성 후 전자발송 또는 우편 발송
3.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때는 보호자회의 시 주요 안건으로 논의 및 결정하고 변경된 비용을 적용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전자발송 또는 우편 발송

제9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①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하여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비용은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급·간식비, 아·미용비, 기저귀비용)으로 구분한다.
- ④ 장기요양비용 명세서 및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비용과 비급여비용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본을 제공하여 비용부담금을 수령한다.

제10조 (비용 납부방법)

수급자에게 발생한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한다.

-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 비용을 산정하여 익월 10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② 입소 당월은 입소당일부터 말일까지의 비용을 산정하여 익월 10일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③ 납부할 비용은 시설에서 지정한 계좌로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계좌이체가 어려운 상황일 경우 시설은 현금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 ⑤ 납부일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로 한다. (단, 익월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을 납부일로 한다.)
- ⑥ 시설은 납부한 금액에 대한 납부확인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1케어, 조기귀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보호자와 협의 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② 수급자 또는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에는 격리할 수 있다.
- ③ 특별한 보호는 수급자의 직접적인 보호를 위한 격리보호, 낙상 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 벨트 사용, 욕창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적 제한을 포함한다.
-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 일시적인 신체 제한이 있을 경우 수급자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 ⑤ 수급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및 협력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병원 입원을 돕거나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 결제가 원칙이다.

제12조 (배상책임)

본 시설은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하며, 다음의 각 항에 의하여 시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한다.

- ①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수급자에게 폭행 및 상해로부터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단, 과실이나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수급자의 건강악화는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② 시설의 과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해 수급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③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13조 (면책범위)

다음의 각 항과 같은 경우는 면책범위에 속한다. 본 시설은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원활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① 천재지변 및 사면 등의 사고로 인해 수급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③ 수급자의 특이 질환으로 인해 발작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④ 시설 내에서 자연사하였을 때
- ⑤ 이용 계약 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합의 된 경우
- ⑥ 보상을 받은 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혹은 기타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대한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시설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 ⑦ 계약된 급여제공 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